

# 대법원판례 해설

## - “2NE1” 상표 사건 -

### 1. 사건의 표시

2012후1033거절결정(상), 대법원 2013.10.31. 선고

### 2. 판결이유의 요지

(1) 여성 아이돌 그룹가수의 명칭 ‘2NE1’은 저명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위 제6호의 적용의 기준시점은 출원시이다.

(2) 원심이 상품류구분 제3류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2NE1”은 출원시 기준으로 저명한 여성아이돌 그룹가수의 명칭 ‘2NE1’과 동일하므로 위 6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3) 원심이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하여 결정계사건인 상표의 거절불복사건에 참가인(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

### 3. 판례 해설

(1) 대법원은 출원상표 “2NE1”의 출원당시에 여성아이돌 그룹 가수의 명칭 ‘2NE1’이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지지하였습니다.

(2) 여성그룹가수 ‘2NE1’이 대중매체에 모습을 나타낸 때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까지 약 2개월에 불과한데도 여성그룹가수 ‘2NE1’의 명칭에 저명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여성그룹가수 ‘2NE1’과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상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고, 오늘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K-POP’의 확산과 ‘한류열풍’ 등과 함께 대중매체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종래 거절불복사건 등 결정계사건에서는 심판참가가 허용되지 않았고 대법원 93후1834 사건(홀라보노 사건)에서도 상고심에서의 보조참가를 각하한 사례가 있어 심결취소소송인 특허법원단계에서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논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특허법원이 신설되고 소송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인 특허청장이 당사자로서 피고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규정을 적용하여 보조참가가 허용되어 왔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결정계사건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 허용여부의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절차인 특허심판원의 심판 단계에서는 여전히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단지 심판참고자료 형식의 정보제공은 가능합니다.